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14 발의연월일: 2021. 7. 2.

발 의 자:조응천·김병기·김병욱

박상혁 · 서삼석 · 송옥주

오영환 · 위성곤 · 이학영

최인호 · 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필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토지수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취득일(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사업 간 중복·상충되거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간 지연되다가 변경, 폐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 터 1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당초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되었던 공 공필요가 소멸했더라도 단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넘어 국민의 재산 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2019헌바131, 2 020.11.26.).

해외의 경우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10년보다 더 길게 규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사업완료를 고시하도록하며, 잔여지의 손실 또는 보상, 매수 및 수용, 잔여 건축물의 수용 등의 청구 기준일을 공사완료일에서 사업완료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 시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제24조의2 신설 및 제91조제1항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한다.

⑤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고시·공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①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 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 ④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을 고시·공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제2항 중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항 후단 중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를 "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 후단 중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사업완료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경우 취득일"을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로,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업이 폐지 • 변경된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경우: 사업완료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①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
	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
	된 내용을 고시·공고한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
	는 것으로 본다.
<u>⑤</u> · <u>⑥</u> (생 략)	<u>⑥</u> ⋅ <u>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u>⑦</u>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u>⑧</u> 제7항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u> <신 설></u>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① 사업
	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
	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및 취득
	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u>하여야 한다.</u>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 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 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 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 공·완료·사용개시 등을 고시 · 공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현행과 같음)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 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 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 일"이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 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 용 청구) ① -----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 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 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 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 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 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u>사업완</u>료일까지 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 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생 략) 대한 보상 등) ① (현행과 같 유) 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 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 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 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

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 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 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 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91조(환매권) ① <u>토지의 협의취</u> 기 등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u>사업완료일</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환매권) ① <u>공익사업</u>
<u>경우</u> 토
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
일"이라 한다)다음 각 호
<u>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u>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u>신</u>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

- 1.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토지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

 게 된 경우: 해당 사업이 폐

 지・변경된 날
-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 ② ~ ⑥ (현행과 같음)